

서울특별시 서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유지웅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76호)

○ 2026.03.26.
○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3. 유지웅의원 외 6인(발의7, 찬성0)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6.
다. 상 정 일 자 : 2026. 3. 26.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지웅 의원)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훈)

■ 개정취지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사전 절차 및 사후 관리 강화, 직원 보호 제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개정규칙안 검토

-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시켜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항에 포함시켜 각 호를 삭제하였음.
- 안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공무국외출장심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신뢰성·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의 시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신설하는 안 제16조(직원 보호 등)는 의회 소속 직원이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그 밖에 어문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서의 주제어 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검토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공무국외출장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위해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 징계처분 의원에게 대해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위법·부당한 출장일 경우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시 불이익 처분 금지 등 직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전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성·타당성 및 구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짜구정리내용 : 없음